

21C 도시철도 운영 패러다임 선도

부 산 교 통 공 단

수신자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위원장

(경유)

제목 제규정 제정(안)에 관한 조합 세부의견 제출 요구

선 원 장	2005.12.7.	지 시	6618
결 재 · 공 람	2005.12.7.	결 재 · 공 람	조 직
조 직	조 직	조 직	조 직

1. 부교노2005-622(2005.12.2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 공단은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중 근로기준법 제96조와 관련한 제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, 귀 조합측에서는 금번 제규정 제정안이 불이익한 변경임을 주장하며 보충교섭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공단은 귀 조합과 협의 중인 제규정안이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, 귀 조합측의 주장하는 불이익한 변경의 부분을 아래 양식에 의거 2005.12.26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2006.1.1 부산교통공사 설립 이후 동 규정과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□ 작성 양식

규 정 명	조 항(조문포함)	조 합 의 건	관 련 근로조건	비 고
		(구체적으로 작성요)	(임금, 근로시간 등)	

부 산 교 통 공 단 이 사



결재 기안자 김원호 노무복지팀장 정영지원차장 박관근

비조 노무계획 담당 김원호

시행 노무-002732(2005.12.21) 접수 ()

우614-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단1로6(별천1동861-1)

/ <http://www.subway.busan.kr/>

전화 051-640-7167

모사전송 051-640-7124

/ yunx05@buda.or.kr

/ 비공개